확정신고

○확정신고란

확정신고란 전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에 얻은 소득에 대해서 확정된 금액을 계산하여 그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.
소득세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사람이나 두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, 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2 월 16 일부터 3 월 15 일까지 근처 세무서에「확정신고」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확정신고 용지는 재일기간이 1 년 이상으로 전년에 확정신고를 하여 납세한 사람에게 우송됩니다.
이제부터 새롭게 확정신고를 하려는 사람이나 원천징수된 사람은 우송되지 않습니다.

○신고에 필요한 것

(1) 전년도 소득을 증명하는 것 (원천징수표나 지불증명서)
(2) 부양공제에 필요한 것 (본국에 있는 부양자의 출생증명이나 송금증명)
(3) 보험료공제에 필요한 것 (보험의 공제증명서)
(4) 재류 카드, 특별영주자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
(5) 인감 또는 사인
(참고 https://www.nta.go.jp/information/other/data/r02/oin/index.htm)

○세금의 환부

부양가족이 늘었거나 거액의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, 재해나 도난 등으로 주택 및 가산에 손해를 입었거나 재해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지출을 한 경우, 자가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, 연간수입이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낮은 경우 등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면 5 년 전부터 계산하여 세금의 일부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
이 신고는 2 월 15 일 이전에도 세무서에서 접수를 받습니다.

재류자격 갱신이나 변경의 경우에는 확정신고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필요한 사람은 발행을 신청해 주십시오.

문의처

(1) 니시노미야세무서 전화 0798-34-3930

(2) 택스앤서 홈페이지
https://www.nta.go.jp/taxes/shiraberu/taxanswer/index2.htm

※ 주 자세한 사항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